

2019년 하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고 성 사안 조사 관련 법률 자문	
	2	수사기관의 각하통보와 별도로 자체 징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3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보조 관련 제재기준 마련에 관한 법률 자문	
	4	●●초 ◆◆분교장 진입로 통행금지 및 매수 요청 관련 법률 자문	
	5	◇◇초, ▶▶▶중 부지 내 사유지 매입 관련 사용료 지급에 관한 법률 자문	
	6	상가 전세계약(△△ 사무실) 종료와 관련한 법률 자문	
	7	인정수수료 관련 법률 자문	
	8	교원 보결수업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률 자문	
	9	비위 관련 기간제교원 조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 자문	
	10	정보공개 청구 관련 법률 자문	
	11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용역 관련 법률 자문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신입생 모집 중지 관련 법률 자문	
	13	재산(토지) 처분에 따른 시세차익 학교회계 편입 관련 법률 자문	
	14	무허가건물 대부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관련 법률 자문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15	유아학비 방과후과정 소급지급 가능 여부 법률 자문	
	16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17	교사 김00의 직위해제 처분 관련 법률 자문	
	18	유아교육법 제 18조 지도·감독의 범위	
	19	강의실로 등록된 장소에서 단체 급식 가능 여부 법률 자문	
	20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관련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률 자문	
	21	소송비용액 확정 관련 법률 자문	
	22	인천▽▽▽학원 민원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23	학원 등의 명칭표시 및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여부 법률 자문	
	24	공장용지에 중장비 운전학원 실습장 등록 허가 가능 여부 법률 자문	
	25	행정처분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 시기 확인 요청	
	26	감사 처분 관련 법률 자문	
	27	감사 처분 재심의 관련 법률 자문	
	28	♫♫진흥원 전력 교육용에 관련한 법률 자문	
	29	2단계 입찰에 따른 수학여행 제안평가 서류의 허위 여부 판단 자문 요청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30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법률 자문	
	31	공유재산 사무처리에 따른 법률 자문	
	32	교복 입찰 계약 관련 법률 자문	
	33	경찰 정보공개 수사협조의뢰 관련 법률 자문	
	34	정보공개 사무처리와 관련 법률 자문	
	35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정보공개 요청 건 법률 자문	
	3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해석 자문	
	37	학교회계 착오송금에 대한 환수 절차 법률 자문	
총계		37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	◎◎고 성 사안 조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input type="checkbox"/> ★★★가 미성년자에게 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명시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위”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자로 볼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위에 따른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위로 볼 수 있음.
2	수사기관의 각하통보와 별도로 자체 징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 및 횡령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각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비록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처분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비록 수사기관이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교원으로서 원아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 실무 매뉴얼」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교원이 공금을 유용한 경우 해당 교원을 사립학교법 제 61조 제1항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립유치원의 공금을 유용한 사립유치원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각하 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에 사립유치원 원장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검찰에서 최종 ‘각하’ 처분한 것이라면 형사사건으로서의 요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임.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9조와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 61조를 근거로 하는 징계도 불가능한 것임.</p> <p><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유치원 경영자를 교비유용(사립학교법 제19조 제6항 위반) 혐의로 징계한다면 법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p>
3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보조 관련 제재기준 마련에 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 관련 상위 관련법의 미비로 재정결함 지원금에 대하여 교육청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43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위반인지 여부 (교육청의 징계 요구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차등, 명예퇴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임용시 명예 퇴직수당 환수)	<p><input type="checkbox"/>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함.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없이 제재 조항을 조례나 행정지침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함.</p> <p><input type="checkbox"/>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권한을 감독·제재하기 위한 재정지침 마련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위원회 권한침범,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의 비합리적인 징계 견제를 위해서는 별도 입법 필요함. 명예퇴직수당이 동일한 지방재정</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교부금으로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환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위법임. 별도 입법 필요.</p> <p><input type="checkbox"/>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재정결합지원 사업 재정지원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가능.</p>
4	<p>◎◎초 ◆◆분교장 진입로 통행금지 및 매수 요청 관련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관련 법령 및 과거 위성사진을 고려할 때,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통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지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어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현재 분교장 진입로는 학생, 교직원, 거주민 등의 일반 공중이 수십년간 왕래에 사용해온 현황도로로써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금지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소유자의 주장은 부당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됨. 단, 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진입로가 있다하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개설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함. 단,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토지소유자가 요청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됨.</p> <p><input type="checkbox"/> 통로를 손괴, 불통케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 단순히 도로를 가로막고 일시적으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는 다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5	◇◇초, ▶▶▶중 부지 내 사유지 매입 관련 사용료 지급에 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 내 사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인 한국 □ □ □ 공사가 무단점유에 대한 5년간 사용료를 요청해 온 바, 상기 판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한국 □ □ □ 공사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출 및 요청한 사용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판례 또는 국가배상 실무상 적절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사에 대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사용료 청구는 정당함. <input type="checkbox"/> 공사에 대해 변상금 내지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교육청에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바, 공사가 산정하여 청구한 사용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공사가 산정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은 교육청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이는 바, 적절하다고 사료됨.
6	상가 전세계약(△△ 사무실) 종료와 관련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해당 상가건물이 민법만 적용되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민법만 적용 시 계약 해지 효력 발생일은 언제부터인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계약 해지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지	<input type="checkbox"/> 민법 대상 <input type="checkbox"/> 계약만료일 이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종료 <input type="checkbox"/> 계약기간 만료일 당면 종료(단, 유선 또는 문자로 한 계약 종료 요청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불과) <input type="checkbox"/>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야 해지 효력 발생 <input type="checkbox"/>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가능 및 별도 청구 소송, 가압류 필요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이 대차목적물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인도와 상환으로 동시 보증금 반환 구할 수 있고, 이미 인도한 이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후면 청구 소송 가능
7	인정수수료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인정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인정 신청자는...(중략)...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반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만약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의 인정수수료 면제 규정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면, 인정도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일을 고려한다면 규정이 통일되어야 하지 않은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검정도서의 수수료 납부의 의무조항에 대하여 인정수수료 부분을 준용한다고 했을 때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교육규칙의 해당 규정이 상위법 위반이 아님 <input type="checkbox"/>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검정수수료를 필요적으로 납부할 것을 전제하고 있을 뿐, 교육부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위 법규인 교육규칙이 임의로 인정수수료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현행 법체계상 각 교육감이 정한 규칙이 법규정에 위반되는 않아 보임. 우선 법 규정에서 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고, 침익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임. <input type="checkbox"/>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3조 제1항에 의할 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인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하위법령인 교육규칙을 통하여 인정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인정도서에 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하여 동규정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상위법에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하위 법령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한 규정임.</p>
8	<p>교원 보결수업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교원이 담임교사를 대신하여 학생들의 쉬는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보결수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학생의 휴식시간과 하교지도 시간까지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추가수당 지급이 어려움</p>
9	<p>비위 관련 기간제교원 조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비위 사실이 있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별도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으로 구조화하여 채용 전 학교에서 조회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기타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닐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4항에서 동법 제10조의3 제1항을 준용하고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용 제한 사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교육공무원의 특성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비위 기간제교원에 대해 인천교육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고, 학교에서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위 기간제교원이 확인 절차없이 채용되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근로자 취업 방해 목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p> <p>다만, 비위 사실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어야만 그 대상인 기간제교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같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비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강임·정직·면직 등 해임 및 파면에 이르지 않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교원의 취업 제한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은 부당함. 다만, 상벌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누적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단을 제작하여 보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당사자에게 누적적 비위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그러한 명단을 제작·보유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법상 채용의 제한 내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교원의 명단을 취업제한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을 것임. 교육공무원법상 채용의 제한 내지 결격사유를 구성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이와 같은 교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저촉된다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률에 저촉되는 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등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인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더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p>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령 등’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법령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법령 등’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입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먼저 추가한 후에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p> <p><input type="checkbox"/> 비위의 정도가 파면·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경우, 정규직 교원은 파면·해임을 받은 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 4에 의해 명시적으로 채용이 제한되도록 되어있지만 기간제교원은 징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파면·해임되는 경우도 없으므로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제한될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음.</p>
10	정보공개 청구 관련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를 가지고 다른 법적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민원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방법에 따라 추구해야지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은 탈법의 소지가 있어 보임.</p> <p><input type="checkbox"/>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원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비공</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됨.</p> <p>- 「비공개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등)</p>
			<p><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등)</p> <p>- 해당 청구인(민원인의 배우자)이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구제와는 무관</p> <p>「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p> <p>결론: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 따라 민원 처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민원내용은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사료됨.</p> <p>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청구인은 명확한 근거없이 단순히 심증만을 근거로 피력한 것이며,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패소한 바도 있어 권리구제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됨.</p> <p>민원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 공개)에 따라 부분공개가 가능할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공개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p>
11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용역 관련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에 “공기청정기 유형은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으로 본래 용도에 맞게 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고 명시 되어 있음.</p> <p>이 경우,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겸용제품의 경우 위에 명시되어있는 본래 용도에 맞게 출시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공고문에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을 기재하였는데, 그 취지는 각각의 형태를 한가지씩만 가져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태를 나열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두 형태를 겸용한 것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출시된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p> <p><input type="checkbox"/> 공기청정기 유형이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으로 구분되나, 겸용제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입찰과 관련하여 겸용제품도 본래 용도 즉 공기청정기 용도로 출시된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p> <p><input type="checkbox"/>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겸용 제품도 본래 용도에 맞게 출시된 제품으로 보아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입찰공고문에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2종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겸용제품을 입찰 공고문이 예정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유형이 아니라고</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p> <p>스탠드형과 벽걸이형 겸용제품은 스탠드형에도 해당하고, 벽걸이형에도 해당하는 것이 스탠드형도 아니고 벽걸이형도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찰공고문에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겸용제품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됨.</p> <p><input type="checkbox"/> 과업지시서상 공기청정기 유형에 따라 임대품목, 추정금액, 학교급별 임대수량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공기청정기의 규격 및 성능조항에서 스탠드형, 벽걸이형 겸용제품은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벽걸이형 스탠드형 겸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란의 규격 및 성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용도에 맞게 출시된 제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p> <p><input type="checkbox"/> 공기청정기가 스탠드형이든 벽걸이형이든 공기청정기라는 본래의 기능을 하는 기계식 청정기이면 과업지시서의 규격과 성능 갖춘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p>
12	<p>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신입생 모집 중지 관련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등록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A학교에서 자발적으로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실시 하지 않는다 하므로, 교육감이 사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p>	<p><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 각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교육감이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조치를 넘어서서 「평생교육법」 제42조의2 지도감독권을 근거로 학생모집을 강제하</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는 것은 월권적 권한행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감이 사실상 신입생 모집을 독려하는 정도의 행위 이외에 사후적으로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매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음.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은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자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법령상 신입생 모집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신입생 모집을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p>
13	재산(토지) 처분에 따른 시세차익 학교회계 편입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2019년 매입 및 2019년 매각으로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규정을 근거로 시세차익이 발생한 금액도 학교회계로 편입 가능한지 여부	<p><input type="checkbox"/> 시세차익에 대하여 교육청이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요구하려면 토지의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난 경우에는 그 손실분을 보전해준다는 원칙이 교육청에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함. 매각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실현한 이익에 대해서까지 학교회계로 편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임.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은 2015.3.27. 법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소급 적용함은 위법한 해석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29의 규정은 부동산 매입, 매각으로 인한 시세차익 상당을 학교의 회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거 규정으로 보이지 않음.</p> <p>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교비의 일부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차익 상당을 학교회계로 편입하라는 내용으로 교육청에서 명하는 것을 근거규정이 없는 조치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안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회신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어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본건에 참조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p> <p>「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은 해당학교의 2009년 회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음.</p> <p>해당학교의 자발적 의사로 보아 현금 17억원에 대한 편입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편입을 요구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p>
14	무허가건물 대부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 배우자 대습상속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유자 중 1인과 대부계약의 법률상 하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유자 중 1인에게 변상금 부과의 법률상 하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 배우자 대습 상속 실시 <input type="checkbox"/> 법률상 하자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용 및 수익자와 대부 <input type="checkbox"/> 조건 유효(취소 사유 존재) <input type="checkbox"/> 지분만큼 대부 계약 적법 <input type="checkbox"/> 공유자 중 1인에게 변상금 부과 적법(불가분 채무)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이용 및 수익자에게 부과 <input type="checkbox"/> 지분만큼 부과 적법
15	유아학비 방과후과정 소급지급 가능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방과후과정비를 소급하여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시 법적 근거	<input type="checkbox"/>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즉 ‘사고이월비’에 해당하므로, 그 과소지급된 차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소급하여 추가 지급 가능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해야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민사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돌려줘야 함. 법적근거는 지출했어야 할 지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생긴 부당이득 반환의무임.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령과 ‘18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2017-142호) 2018학년도 유아학비지원계획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연히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적 급부청구권의 법적 성격
16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부당수급 확인시, 회수 금액에 대해 현재년도의 부당수급은 유치원의 세입부분에서 반환요청이 가능하나, 과년도의 부당수급 유아학비의 경우는 유치원 원장 책임으로 사비로 반환해야하는지, 현재 유치원 회계에서 반환해야하	<input type="checkbox"/> 반환할 지원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측에서 부당수급한 과년도 방과후과정비는 유치원 원장이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유치원 원장 개인이 사비로 부당수급한 지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는지 여부	<p>금을 반환해야 할 것임. 금년도 세입과 관련된 부당수급액이라면 금년도 세입에서 반환하는 것이 맞지만 과년도 부당수급액은 금년도 세입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원장이 개인 사비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이 부정수급 받은 과년도의 방과후과정비도 유치원의 현재 세입부분에서 반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p>
17	<p>교육공무원 직위해제 관련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교사 김00의 직위해제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3(직위해제) 제1항 6호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p>	<p><input type="checkbox"/> 해당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따라 직위해제는 부당함.</p> <p><input type="checkbox"/>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는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결과를 보고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p> <p><input type="checkbox"/> 13세 미만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므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직위해제 처분 타당</p>
18	<p>유아교육법 제 18조 지도·감독의 범위</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사립)과 이웃주민(옆집) 사이에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그 유치원에 아무런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며 약속 불이행시 교육지원청에서는 더 이상 할</p>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 18조 제1항이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규정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함이므로 민원인과 유치원의 소음분쟁에 관한 사항은 유</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것이 없다는 담당장학사의 태도는 명백히 책임을 방기하는 사안이라고 주장, 민원인이 유아교육법 제 18조에 의거하여 소음문제에 관한 내용이 교육지원청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p>	<p>아교육법 제 18조 제1항의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법적 근거없이 사립유치원에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법할 가능성이 있음.</p>
19	<p>강의실로 등록된 장소에서 단체 급식 가능 여부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학원 내부에 식당이 아닌 강의실로 등록된 장소에서 단체 급식이 가능한지</p>	<p><input type="checkbox"/> 강의실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는 장소에서 조리를 요하지 않는 도시락이나 간식 등을 단순히 취식하는 장소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학습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강의실을 부수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여 「학원법」 제6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강의실에서 급식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거나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된다거나, 휴게실에서만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p> <p>학원에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적정한 시설기준 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강의실에서 일시적인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방법’의 일환으로 무방하나, 지속적인 단체급식(중식,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항의 ‘시설·설비’에 해당되어 급식시설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강의실 등을 식당으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채 식당 용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원 내 강의실로 등록된 장소에서 단체급식 등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시설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식당이 아닌 강의실에서 학습자에게 단체 급식(중식, 간식)을 하였다면, 이는 「학원법」 제6조,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것임.</p>
20	<p>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관련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교습시간 이후에 교습행위는 하지 않고 강의실에 학생이 남아있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관계 법령에 의하면 허용된 교습시간 경과 이후에 교습행위는 없이 단지 강의실에 학생이 남아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습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은 불가하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교습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교습시간 이후에 교습행위를 하지 않고 강의실에 학생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로만은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교습시간을 정한 입법취지상 비록 교습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습시간은 22:00까지로 제한한 것이므로 교습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위 이후까지 학생이 강의실에 남아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상시적으로 10시 이후까지 남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상황이고 학생의 문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임. <input type="checkbox"/> 법령에는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이므로 교습시간 이후 학생이 남아있었다더라도 교습이 없었다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21	소송비용액 확정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소송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원고들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착수금과 관련하여 3건의 소송에 대해 같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사건별로 착수금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해도 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소송물이 유사한 당사자들의 소가를 합산하지 않고	<input type="checkbox"/> 가맹본부가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은 가맹점주 소송수행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됨. <input type="checkbox"/> 가맹본부가 본안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이 실제 신청인들이 부담한 비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건의 수임한 것과 유사한 정도인 점에서 소요비용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3건의 소송에서 변호사보수의 합계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내로 감액 가능. 신청한 소송비용확정신청금액 중 변호사보수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소송물이 유사한 당사자들의 소가를 합산하지 않고 당사자별 1인 소가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부적절 <input type="checkbox"/> 재판부는 당사자별로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당사자 1인의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p>	<p>한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비추어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사건의 성질, 난이도를 고려할 소송비용액 감액 가능성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소송비용확정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동일한 한 개의 재판부가 아니라면, 원고측이 한 개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각 재판부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각 재판부에 모두 제출하여 판단받을 필요가 있음.</p> <p>접주들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때 소송비용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재판부별로 제출하고, 신청한 소송비용확정신청금액 중 변호사보수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판단받을 필요가 있어 보임.</p>
		<p><input type="checkbox"/>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의한 감액 또는 다른 사유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유사사건에 동일 대리인이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동일 사안에 원고만 나뉜 경우로 모든 원고들이 변호사보수규칙에 정한 소송비용 전액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 항고를 하는 것이 적절함.</p>
22	인천▽▽▽학원	<p><input type="checkbox"/> 민원 내용: 인천▽▽▽학원의 지목이 임야인 실습장</p>	<p><input type="checkbox"/> 임야를 운전실습장으로 등록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민원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p>	<p>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학원등록말소 처리하 여야 한다.</p> <p>자문 내용: 2002년 인천▽▽▽학원의 실습장을 지목 이 잡종지와 임야인 장소로 위치변경 등록함.</p> <p>1. 「학원법」 제17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 록)에 위배되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목이 임야인 실습장 부지에 대해 시설 면적 축 소 개선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p>	<p>없음.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잡종지처 럼 사용되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2002년 지목이 임 야인 곳을 포함하여 실습장을 등록해주었으므로 신뢰관계 가 형성됨. 따라서 민원인의 요구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학원법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는 학원시설평 면도와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시설의 규모의 종류 및 기준은 운전실습장 면적 900㎡만 규정되 어있고 지목에 대한 언급은 없음. 실습장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에 실습장을 설치한 경우 도시계획 또는 도시개발 관 련부서에서 무단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하였을 것임. 위 처분경과에 따라 실습장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학원법 규정에 따라 학원등록말소 등 처분을 해야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학원법」 제17조에 위대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습장 기준면적은 충족하므로 변경등록 전체를 말소하는 것은 어려움. 불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시설면적축소 개선명령 처분이 필 요함.</p>
23	<p>학원 등의 명칭표시 및 옥외광고물 설치</p>	<p><input type="checkbox"/> 특정 상표에 대한 계약 또는 특허를 취득하였을 경 우 옥외광고물에 한글과 병기하지 않고 영문 단독으</p>	<p><input type="checkbox"/> 학원의 옥외광고물에 영문 단독으로 표기 가능하지 않음.</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가능 여부 법률 자문	<p>로 표기 가능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학원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경우 학원 명칭이 아닌 단순한 상표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특정 상표에 대한 계약 또는 특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글과 병기하고 영문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하여도 상표와 상호는 그 기능이 명백히 달리하므로 학원 명칭에 같음하여 사용한 이상 영문 단독으로 표기 가능한 단순한 상표의 표시라고 보기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특정 상표에 대한 계약 또는 특허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영문만으로 상호나 상표를 표기할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해당 건은 단순한 상표의 표시로 볼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물의 접한 일반인이 학원 명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해당 건은 학원 명칭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해당 학원은 학습 방법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학원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경우 단순한 상표의 표시로 볼 수는 없고, 학원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p>
24	공장용지에 중장비 운전학원 실습장 등록 허가 가능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지 않고 중장비 운전학원 실습장 (변경)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중장비 학원 허가는 잡종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장용지에 대해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보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25	행정처분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 시기 확인 요청	<input type="checkbox"/> 2018년도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불참자 행정처분에 적용해야 할 행정처분기준 확인 요청	<input type="checkbox"/> 2018년도 행정처분기준{개정전 조례시행규칙((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42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학원법 부칙은 행정처분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부칙으로 적용기준을 명시해 오고 있는데,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통상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는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26	감사 처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한 지도점검 및 재무감사시 3개 부서에서 확인한 2018학년도 출석부, 차량시간표 시간이 각각 다를 때 최종 재무감사기간에 제출한 출석부와 차량시간표를 증빙자료로 감사 처분이 나가도 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00유아교육 지원계획」에 의거 학년 학기초에 교육청에서 유치원 현황(해당학년 3월 1일 기준)을 제출받는데 그 자료에 교육 운영시간이 명시되어 있음 - 그 기준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 시간을 판단해도 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감사장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기초해서 검토한 결과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사유가 드러났다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면 됨.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이 제출한 경위서와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신빙성있고 실체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감사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측에서 학년 학기 초에 제출한 자료는 실제 운영된 교육운영시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임. 따라서 감사팀에서 감사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 시작 시간에 따라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신청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인원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실지 조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해당 유치원의 실제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기초로 판단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됨.</p>
27	<p>감사 처분 재심의 관련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청 감사 처분 지적사항에 대한 유치원 재심의신청서에 대해 기각 및 반영 여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고 요구 1명 - 유치원 감사자료 작성, 제출 및 수감태도 부적정: 경고 요구 2명 - 세출예산 집행 및 선금 지급 업무 소홀: 주의 요구 1명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부적정: 경고 요구 1명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감사처분 재심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 이유 없음 - 신청인의 주장 납득하기 어려움. - 신청인의 주장 이유 없음. - 부모들이 납부한 내역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역을 비교하여 주장 당부 판단해야 함.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감사처분 재심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단정하기 어려워 신청 사유는 있다고 사료됨. - 외형상 자료제출 요구에 뒤늦게나마 응하였다면 감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의 주장 타당하지 아니함. - 실제적 진실에 따라 재심의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됨.
28	<p>진흥원 전력 교육용에 관련한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진흥원 교육용전력 수급 가능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교육기본법에 정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조례」 제37조 제5항에서 정한 유아교육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감면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 또한 진흥원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연</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히 전기 공급약관에 정한 기구로서 전기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에 합당한 해석으로 판단됨.</p>
29	<p>2단계 입찰에 따른 수학여행 제안평가 서류의 허위 여부 판단 자문</p>	<p>□ 제출된 타 지역 실적증명서류 허위 여부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업체는 동일인이 인천, 경기도, 서울 3곳에 각각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임. - 인천 법인등록번호로 수행한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동일인으로 제출된 경기도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기도 실적을 인정받아 적격점수 취득함. - 실적점수를 배제하고 “0” 점 처리하여도 기타 다른 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적격점수 받을 수 있는 상황임. - 학교에서 요구한 수행실적이란 꼭 인천 관내학교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으로 지역제한을 하였기에 인천 사업자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하는 것이 맞으며, 점수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유사한 상호와 동일인 수행실적을 제출함으로써 당초 평가 시 실적점수를 “0” 점 처리하지 않고 최고점수를 취득한 것은 담당자 과실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수행실적 서류에 대한 허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자문하고자 함. - 인천이 아닌 타 지역 법인의 수행실적 서류 제출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여 	<p>□ A업체는[수학여행 용역제안서]에 수행실적을 기재하면서 B업체의 수행실적을 기재하였음. A업체가 첨부자료로 B업체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용역제안서에도 적극적으로 실적내용을 기재하였음.</p> <p>A업체가 참고자료로만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학여행 용역제안서]에도 적극적으로 실적으로 기재해 놓은 행위는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실적있는 업체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p> <p>□ A업체가 동일인이 인천, 경기, 서울에서 각각의 법인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법인은 각각의 인격을 가진 것이므로 전혀 별개의 법인격임.</p> <p>인천이 아닌 타지역의 A업체실적을 마치 인천업체가 수행한 것처럼 실적을 제출한 것은 오히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법상의 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음. 즉 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p> <p>동일인이 다른 지역에 몇 개의 법인을 만들더라도 각 법인은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임. 이런 내용을 알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더이상 다른 검토가 필요없다고 보임.</p> <p>□ 회사의 지분을 동일한 사람이 보유한 계열회사라고 할지라도 법인격은 다르며 실적도 각자 법인에게 귀속되므로</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야 하는 상황임.	<p>엄연히 별개의 법인이고 그 실적도 엄연히 각자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p> <p>국가(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는 그 공정성 및 투명성, 기술성을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p> <p>따라서 위 실적은 허위라고 판단되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부정당 제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p>
30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상금부과 사전통지가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단점유에 대한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함.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최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음.
31	공유재산 사무처리에 따른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용지 일부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살던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그 주택 내에 위 자녀의 물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 점유하고는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물은 도달이 안되고 있는바, 위 주택을 철거할 경우 분쟁 소지가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건물을 점유한다고 할 때 꼭 몸이 그곳에 있어야만 점유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이 남아있더라도 통상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봄. 자녀의 물건도 없고 완전히 빈 집이라면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음. 그냥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아무리 학교용지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 행위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결국 한정승인한 자녀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 공유재산의 측량착오 또는 경계설정 잘못으로 사인이 부평중학교에서 설치한 담장을 신뢰하여 담장 바깥쪽의 토지를 본인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가능여부 및 대상기간</p>	<p>거토록 하는 것이 안전하고, 최선의 방법임.</p> <p>□ 학교에서 담장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인근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학교용지의 경계에 맞게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인이 학교 담장 밖의 학교용지를 본인 소유로 알고 점유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무단점유를 한데 대한 책임은 학교 측에 있다고 보이고, 민법에 있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이러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 해보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음다. 다만, 귀 교에서 그 사인이 학교용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통지를 그에게 하였다면 그때부터는 학교용지인 사실을 알았으므로 인도를 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계속 점유할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됨됨. 따라서 측량 후 학교용지임을 통지한 2018.11.27.이후부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p>
32	교복 입찰 계약 관련 법률 자문	<p>□ 학교 주관 교복 구매 2단계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견본품 교복이 낙찰업체에서 제작한 교복이 아닌 타업체의 교복을 제출한 행위가 ‘허위 사실’에 해당되어 계약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p>	<p>□ 제안서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 체결 전이라면 낙찰자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33	경찰 정보공개 수사협조의뢰 관련 법률 자문	<p>□ 외부인이 교내에 출입하여 부적절한 장소에 비치한 오토바이로 인해 다수의 학생이 화상을 입어 신고하였으나 경찰의 입장은 신고자가 학교측임에도 오히</p>	<p>□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안 조사 협조 및 학교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해</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려 학교담당자 및 학교측 책임을 묻는 수사협조의뢰 문건을 보내옴. 이네 정보 제공여부를 검토중이며 정보공개할 하지 않은 수 있는지 여부</p>	<p>경찰서 방문을 하도록 자문함. 정보공개할 거부하는 문건을 보내기보다 경찰서에 담당자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학교측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사료됨.</p>
34	<p>정보공개 사무처리와 관련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직업, 강사료 계좌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 공개 대상 여부와 공개범위에 대한 질의</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강사료에 대해서만 공개 대상이 됨</p>
35	<p>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정보공개 요청 건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가해교사B(지목된 교사)가 9.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사A가 제출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청서 및 교육활동 침해 진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함</p> <p>- 피해교사A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본인이 제출한 교권보호위원회 요청 관련 서류에 대해 비공개요청을 신청한 상태임(교권보호위원회 자진 철회를 하였으므로)</p> <p>-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관련 자료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이 철회되어 더이상 지목된 교사가 그에 대해 방어를 할 필요가 없게 된 점, 신청이 철회된 지금 신청서와 진술서 기재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로 인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보공개법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예시를 하였지만 그 뒷부분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신청서 및 진술서의 내용도 개인적인 생각을 기술해 놓은 것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해석되어 비공개해야 함.</p>
36	<p>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해석 자문</p>	<p><input type="checkbox"/> 학생이 해군 특전병 지원을 위한 병역판정신체검사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정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학생이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행위는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임.</p> <p>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에 의하면,</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람.
37	학교회계 착오송금에 대한 환수 절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착오송금에 대한 환수 절차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민사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input type="checkbox"/> 형사적으로 횡령죄 처벌 <input type="checkbox"/> 착오 송금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input type="checkbox"/> 채권가압류 신청 <input type="checkbox"/> 횡령죄 고소